

환경부
보도자료

- '05.6.27 배포
- 사진 없음
- 총 6쪽

환경정책실	이정섭 과장	전화	02-2110-6960
환경보건정책과	이가희 사무관	(메일)	lgh0311@me.go.kr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항목을 OECD권고기준으로 확대
 - ◇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거치는 유해성 심사절차 일원화
 - ◇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을 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기업체 부담 완화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29일 입법예고 한다.
-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화학물질확인, 유해성심사제도,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시 그 동안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3개 항목을 기본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OECD 권고 수준에 맞추어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 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였다.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해성심사 신청 및 통보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를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연간 유독물을 2천톤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200톤 이상 설치한 자로 정하고
 -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며 정기검사결과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명받은 유독물 영업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하였다.
 -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신고는 매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신고이후 물질의 종류 및 함량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신고토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12월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붙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 대비물질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OECD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해성심사 면제항목 중 완제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추가함(안 제8조)
- 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가스상 유독 물영업자에서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등 일정수량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으로 변경 함(안 제18조)
-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의 수입허가를 면제함(안 제21조)
- 라.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중 독성,

폭발성 및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56종을 지정함(안 제23조)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및 사후 관리, 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 등 위임범위를 확대함(안 제31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 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구조식, 사용용도 및 면제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OECD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외에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 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를 환경부로 창구 일원화 함 (안 제5조)
- 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유독물의 수입 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최초 신고 후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기검사 대상을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점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20조)

아.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